

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서식] <개정 2019. 9. 24.>

(앞쪽)

[ ] 입목벌채  
[ ] 임산물 굴취·채취  
(변경)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전화번호
	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	

산림 소재지
--------

지적	m <sup>2</sup>	구역면적	m <sup>2</sup>	벌채 또는 굴취·채취 면적	m <sup>2</sup>
----	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신청내용	종류       	방법       	용도       	신청수량		잔존면적 · 본수 · 군상 수
				수종	수량 ( m <sup>3</sup> , 본, kg )	

벌채 또는 굴취·채취 기간
-------------------

변경사유
------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,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·채취 (변경)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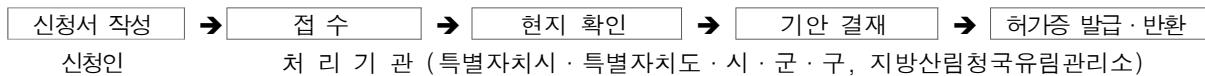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 
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     귀하

	<p>1.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</p> <p>가. 벌채구역도(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)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</p> <p>나.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</p> <p>다. 사업계획서(입목벌채의 목적, 사업기간, 임산물의 활용계획, 조림 및 조림지 사후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라. 「산지관리법 시행 규칙」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(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</p> <p>마.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 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,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·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)</p> <p>바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[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」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(의무조림을 포함한다)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]</p> <p>사.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	
신청인 제출서류	<p>2. 임산물 굴취·채취 허가신청의 경우</p> <p>가. 굴취·채취 예정구역도(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·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)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</p> <p>나.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·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</p> <p>다. 복구계획서 1부</p> <p>라. 굴취·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, 사용권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·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마. 사업계획서(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, 사업기간, 임산물의 활용계획,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바. 「산지관리법 시행 규칙」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(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</p> <p>사.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<p>3.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</p> <p>기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</p> <p>나.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·채취 허가증</p>	
토지 등기사항증명서		

## 작 성 방 법

- ① “지적”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.
- ② “구역면적”란에는 입목벌채등의 구역면적을 적습니다.
- ③ “벌채 또는 굴취·채취 면적”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,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의 면적을 적습니다.
- ④ “종류”란에는 벌채, 굴취,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,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, 숲가꾸기 벌채, 수종갱신 벌채, 피해목 벌채, 산지전용,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. \* 예시 : 벌채(수확벌채)
- ⑤ “방법”란에 벌채는 모두베기, 골라베기, 모수작업, 왜림작업, 숙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(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). \* 예시 : 벌채(모두베기)
- ⑥ “용도”란에 벌채는 제재용, 합판용·단판용, 페프용·침용, 보드용, 간목,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, 굴취는 조경수, 가로수,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, 채취는 수액, 버섯,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. \* 예시 : 벌채(제재용)
- ⑦ “신청수량”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( $m^3$ )를,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,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(kg)를 적습니다.
- ⑧ “잔존 면적·본수·군상수”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,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.

## 처 리 질 차



신청인

처리 기관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,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)